

## VII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운영

### 1 // 사업 개요

#### 1-1 사업 목적

○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·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·학업지원비 등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지원

\* 다만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한함

#### 1-2 추진 근거

○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4조(위기청소년 특별지원), 제15조(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)

#### 1-3 추진 체계

##### 가. 추진 체계도



1 2020년도  
청소년사업 현황 및 방향

2 청소년 정책 축집·조정

3 청소년 참여 증진 및  
우대 사업

4 청소년 활동 및 안전사업

5 청소년 복지사업

6 청소년 보호사업

## 나. 추진 주체별 기능 및 역할

### 1) 여성가족부

- 특별지원 사업 총괄·조정
- 사업 운영 지침 마련 및 보급
- 국고 보조금 확보 및 지원
- 제도개선 등

### 2) 시·도

- 특별지원 사업 세부추진 계획 수립 및 자체 예산 확보
-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(청소년안전망) 사업 운영 지방자치 단체 중심으로 사업시행기관 선정 및 예산 배정
  - 청소년 인구 수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 소재지 우선 선정 등
- 특별지원 사업 운영 지도 및 감독
- 예산의 집행 관리
  - 특별지원 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등
- 특별지원 사업 홍보 강화
  - 관내 학교, 청소년동반자, 청소년쉼터, 방과후 아카데미, 청소년 관련기관, 지역 주민 대상 등 홍보 강화
  -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의 연계지원 적극 추진

### 3) 시·군·구

- ‘운영위원회’ 구성·운영
- 특별지원 대상자 신청서 접수
- 신청자의 다른 법에 의한 지원 사실 및 소득수준 조회
- 사회복지통합관리망(행복e-옴) 연계 사업으로 특별지원 사업안내 지침을 복지 대상자 조사 담당공무원과 공유하여 지원대상자 판단 시 오류발생 방지

1	2020년도 청소년사업 현황 및 방향
2	청소년 정책 충찰·조정
3	청소년 참여 증진 및 우대 사업
4	청소년 활동 및 안전사업
5	청소년 복지사업
6	청소년 보호사업

- 특별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(지원 내용·금액 및 기간)를 청소년 본인, 보호자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
- 운영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로 결정 시 사업비 즉시 집행
- 관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사례관리 계약 의뢰  
【서식 제3호】
- 대상 청소년의 사례관리 현황 지도·감독
- 특별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청소년에게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」 제42조에 따라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(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를 말한다)에 따라 특별지원 관리 카드를 작성 관리
- 특별지원 사업 홍보 강화

#### 4) 운영위원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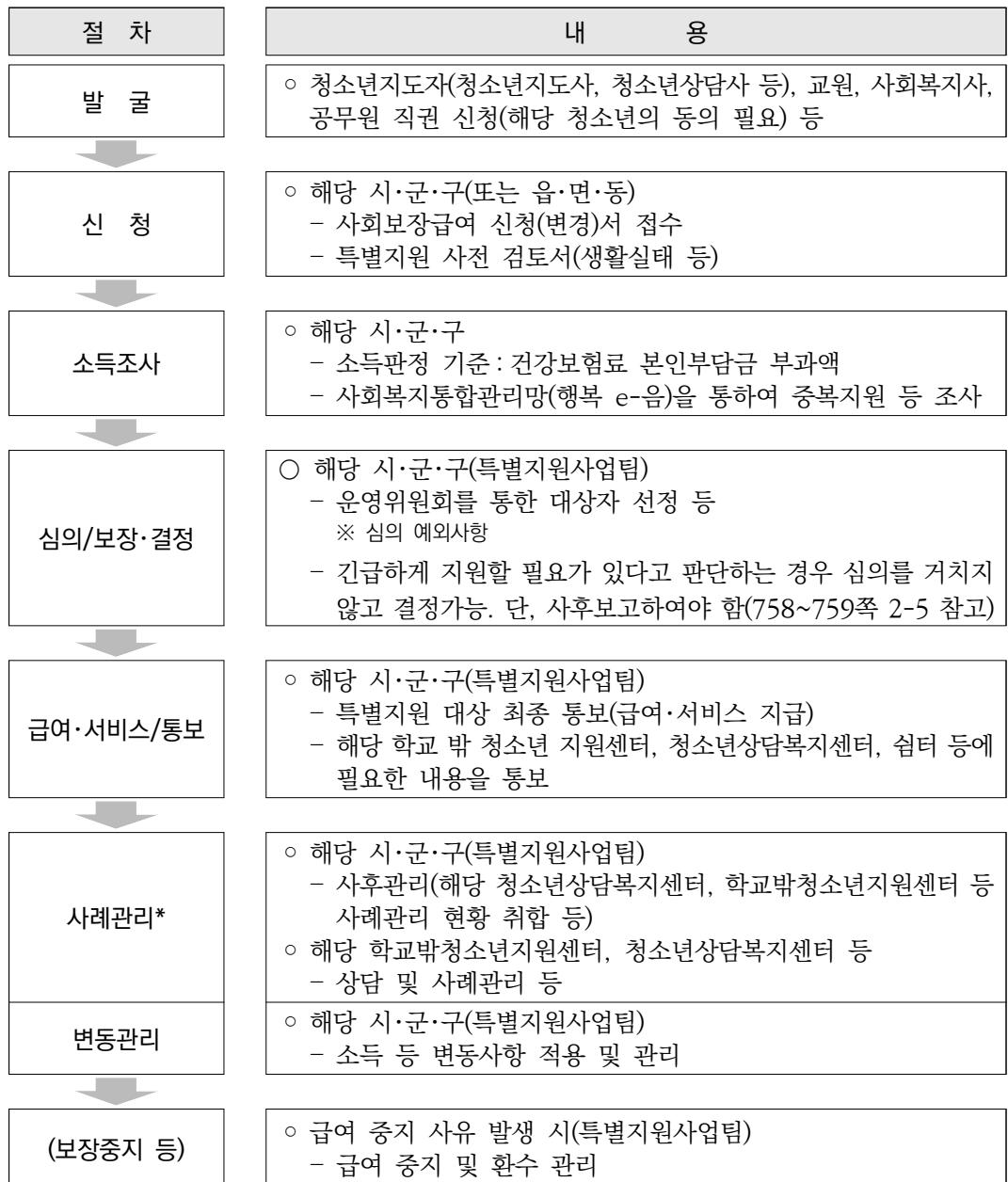
- 구성 및 운영 :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“지역 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”로 통합 운영
- 역할
  -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
  - 지원내용 변경, 기간 연장, 중지 등 결정
  - 그 밖에 특별지원 사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논의

#### 5) 시·군·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, 청소년복지시설 등 (협력기관)

- 특별지원 청소년 발굴 및 대상자 신청
- 특별지원청소년 상담 및 사례 관리
-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별 개인기록 관리
- 연계체계 구축 및 홍보

## 1-4 운영 절차

### 가. 특별지원 사업 업무 흐름도



\* 특별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만족도 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,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평가 및 지도·점검 실시 예정

## 나.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지원기준

구 분	내 용						
지원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만) 9세 이상 (만) 18세 이하 청소년(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(만) 18세 초과 (만) 24세 이하 청소년 포함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·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</li> <li>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</li> <li>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</li> </ul> </li> </ul>						
신청	<table border="1"> <tr> <td>신청인</td>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청자: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, 청소년상담사·지도사, 교원, 사회복지사,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</li> <li>신청장소 : 시·군·구(읍·면·동 주민센터)</li> </ul> <p>* 발굴자가 신청 시 【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- 서식 제1호】 작성 제출</p> </td></tr> <tr> <td>신청서</td>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청서식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 【공통서식】</li> <li>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</li> </ul> </li> </ul> </td></tr> <tr> <td>처리 기한</td>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업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연중 신청서 접수 · 처리함</li> </ul> </li> </ul> </td></tr> </table>	신청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청자: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, 청소년상담사·지도사, 교원, 사회복지사,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</li> <li>신청장소 : 시·군·구(읍·면·동 주민센터)</li> </ul> <p>* 발굴자가 신청 시 【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- 서식 제1호】 작성 제출</p>	신청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청서식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 【공통서식】</li> <li>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</li> </ul> </li> </ul>	처리 기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업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연중 신청서 접수 · 처리함</li> </ul> </li> </ul>
신청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청자: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, 청소년상담사·지도사, 교원, 사회복지사,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</li> <li>신청장소 : 시·군·구(읍·면·동 주민센터)</li> </ul> <p>* 발굴자가 신청 시 【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- 서식 제1호】 작성 제출</p>						
신청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청서식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 【공통서식】</li> <li>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</li> </ul> </li> </ul>						
처리 기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업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연중 신청서 접수 · 처리함</li> </ul> </li> </ul>						
조사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보호자의 유무 및 보호정도 등 보호자에 관한 사항</li> <li>청소년의 생계·학업 및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</li> <li>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</li> <li>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</li> <li>그 밖에 지원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</li> </ul>						
조사 선정 기준	<table border="1"> <tr> <td>소득 기준</td>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중위소득 65% 이하(생활지원, 건강지원)</li> <li>중위소득 72% 이하(학업, 자립, 상담, 법률, 활동, 기타지원)</li> </ul> </td></tr> <tr> <td>가구원 및 소득 범위</td>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주민등록 거주지, 친부모, 양부모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부모만 가구원에 포함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동거 조부모, 형제·자매 등은 제외</li> </ul> </li> <li>예외사항: 쉼터 입소 가출청소년은 사례조사 결과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쉼터 소장,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또는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장의 확인서로 1인 가구로 인정</li> </ul> </td></tr> </table>	소득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중위소득 65% 이하(생활지원, 건강지원)</li> <li>중위소득 72% 이하(학업, 자립, 상담, 법률, 활동, 기타지원)</li> </ul>	가구원 및 소득 범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주민등록 거주지, 친부모, 양부모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부모만 가구원에 포함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동거 조부모, 형제·자매 등은 제외</li> </ul> </li> <li>예외사항: 쉼터 입소 가출청소년은 사례조사 결과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쉼터 소장,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또는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장의 확인서로 1인 가구로 인정</li> </ul>		
소득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중위소득 65% 이하(생활지원, 건강지원)</li> <li>중위소득 72% 이하(학업, 자립, 상담, 법률, 활동, 기타지원)</li> </ul>						
가구원 및 소득 범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주민등록 거주지, 친부모, 양부모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부모만 가구원에 포함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동거 조부모, 형제·자매 등은 제외</li> </ul> </li> <li>예외사항: 쉼터 입소 가출청소년은 사례조사 결과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쉼터 소장,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또는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장의 확인서로 1인 가구로 인정</li> </ul>						

구 분		내 용
조사 선정 기준	종복 지원 금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, 「긴급복지지원법」, 「의료급여법」, 「사회복지사업법」,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지원 예시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 대상자일 경우, 특별지원에서는 ‘생활지원’, ‘건강지원’은 불가하나, ‘학업, 자립, 상담지원’ 등은 지원 가능함 * 동일한 내용의 지원만 금지되며, 다른 항목의 유형은 지원 가능함</li> </ul>
	운영 위원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시·군·구 자체 계획에 의거 운영위원회 운영 * 운영위원회 미 개최 시 【특별지원 긴급지원 사유서 – 서식 제2호】첨부</li> </ul>
지원 내용	종류 및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생활지원 : 월 50만원 이내(2020년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)</li> <li>건강지원 : 연 200만원内外</li> <li>학업지원 : 수업료, 학교운영비(월 15만원 이내), 검정고시(월 30만원 이내)</li> <li>자립지원 : 월 36만원 이내</li> <li>상담지원 : 월 20만원 이내(심리검사비 연 25만원 별도)</li> <li>법률지원 : 연 350만원 이내</li> <li>활동지원 : 월 10만원 이내</li> <li>기타지원 :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</li> </ul>

## 2 특별지원 대상자 신청 및 선정

### 2-1 대상자

#### 가. 나이 기준(「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」 제8조)

-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은 만 9세 이상 ~ 만 18세 이하 청소년(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초과 만 24세 이하 청소년 포함)으로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선정  
 예) 2001. 8. 1. 생은 2020. 7월까지 지원 가능 단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026. 7월까지 지원 가능

#### 나. 선정 기준(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」 제8조)

-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·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
-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
- 보호자가 없거나,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

#### 다.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청소년으로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산정방법과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가구원의 소득활동 유형, 가구원 수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(「청소년 복지지원법 시행령」 제8조)

#### 고시 내용

- 생활, 건강 : 중위소득 65% 이하
- 학업, 자립, 상담, 법률, 활동, 기타지원 : 중위소득 72% 이하  
 ※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

## 2-2 대상자 발굴

### 가. 발굴 경로 및 지원 대상

신청경로	담당자	해당 청소년
당사자 및 가족	청소년 본인, 가족 구성원	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
주민자치센터 (동사무소)	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의 혜택과 중복 되지 않는 항목의 지원 필요 청소년
학 교	교사, 학교사회복지사	재학생 중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
대안교육시설	교사	정규학교의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
소년원, 보호관찰소	교정직 공무원, 보호관찰관	소년원 퇴소자, 보호처분 받은 청소년
사회복지기관 및 시설(쉼터 등)	사회복지사	가출청소년, 미혼모 등
청소년기관 및 시설	청소년상담사, 청소년지도사	내담자 중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청소년

-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, 청소년상담사, 청소년 지도사, 교원, 사회복지사, 공무원 등이 시·군·구에 신청
-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(청소년안전망) 운영기관(청소년상담복지센터,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, 청소년복지시설 등)에서 발굴되는 경우 소속기관 청소년상담사, 청소년지도사, 사회복지사 등이 신청
  - \* 시·군·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, 연계기관 담당자가 직접 신청할 경우 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」 제10조에 의한 서류 구비 후 시·군·구에 신청
-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우선 발굴
  - 학교 밖 청소년 우선 선정(현장 종사자에게 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위한 재량권 부여)
  - 가출, 범죄 및 폭력피해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사회적응과 자립을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
  - 자살시도, 약물, 게임중독, 음주, 흡연, 가정해체 등으로 갈등을 겪는 청소년으로 사회적·경제적·복지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
- 다른 법 및 제도를 통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
  -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또는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른 신청 또는 지원 중 탈락가구의 가구정보를 조회하여 특별지원 대상자 적극 발굴 (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제4호)
  - 가정, 학교, 사회복귀가 필요한 청소년

## 나. 청소년의 위기상황 확인

- 가출, 범죄, 학업중단 등 위기상황의 객관적인 사실 입증은 발굴 단계의 신청인 또는 주변 설문 등을 통하여 현지 확인 조사

### 2-3 특별지원 신청(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」 제10조)

#### 가. 신청인

-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, 청소년상담사, 청소년지도사, 교원, 사회복지사, 공무원 등

#### 나. 신청 장소 및 기간

- 장소 :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(읍·면·동 주민센터)
  - \* 주소가 일정하지 않은 자를 보호·지원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소재한 시·군·구에 신청
- 기간 : 연중

#### 다. 신청서 및 구비서류

- 신청서
  -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【서식 제1호】
    - \* 신청인이 작성하여, 신청서와 함께 제출
    - \*\*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작성 제외
  -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 【별지 제1호서식】
- 구비서류(해당자에 한함)
  - 청소년이 속한 가구(실제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부모에 한함)의 건강보험료 확인서류(납부영수증)

#### 라. 처리기한

-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(14일 범위에서 기간 연장)
  - 사업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연중 신청서 접수·처리함